

*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



1. 중고차 구입전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 ✓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사고이력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자동차 사고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http://www.ecar.go.kr)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http://www.carhistory.or.kr)(http://www.carhistor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고자동차 사기피해 예방 방법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http://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규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 ※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양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수수료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순번	구분	내용
1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